앎, 함, 꿈 어울림 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인간상 구현하는

대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2021

대 성 초 등 학 교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2장 명칭 및 위치 ····· 1

제3장 수업연한 ·학년·학급편제·학기 및 휴업일 ····· 1

제4장 교육과정·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 인정·수료와 졸업 ····· 2

제5장 입학·전학·편입학 ····· 5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조기입학 ····· 4

제7장 학생 출결 ····· 7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 9

제9장 학생 포상 및 훈육 ····· 9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교직원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제11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11

부칙 ····· 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대성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대성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올바른 마음 가꾸기, 새로운 생각 키우기, 튼튼한 체력 기르기”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대성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5번지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업의 성취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7조 [학년]

①(학년제)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학급편제)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

③(학생정원)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④(정원외 관리)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⑤ (학년 및 학기)

1. 학년도는 매 학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겨울방학과 학년 말 방학
3. 개교기념일 : 4월 29일
4. 학교장 재량 휴업일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 인정·수료와 졸업

제9조 [교육과정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

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0조 [교과]

본교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로 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류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학생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해 모든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성장중심평가**를 실시한다.

③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④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③ 각 학년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 전학 • 편입학

제16조 [입학 · 전학 · 편입학]

1) 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동(洞)의 장(長)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7조 ①,②항)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은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2) 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

차에 갈음할 수 있다.

3) 편입학

① 편입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편입학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17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및 재취학]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 조기 입학

제18조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 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⑥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⑦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19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학생 출결

제20조 [출석부 기재 요령]

학생의 출결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결석신고]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전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조일]

학생들의 경조일수는 공무원 휴가 규정에 준하고 초과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산할 수

있다.

제23조 [경고와 통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1차 경고 후에도 계속 결석 할 경우 2차 경고를 한다.

③ 2차 경고 후에도 계속 결석 할 경우 거주지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중단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한 경우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4. 현장 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연간 2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학년단위 학교장 허락 기간 내)

※ 위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7)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등)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제25조 [정원외 관리]

① 제21조 제3항에 의거 거주지 동장의 회신에 행방불명, 무단 전출, 주민등록말소, 해외 이민 등 본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정원외 관리 신청을 한다.

② 담임교사의 정원외 관리 신청과 증빙 자료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정원외 관리가 결정되면 본교 재적에서 제외한다.

④ 정원외 관리 서류는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6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특기적성교육활동비,청소년단체활동비,급간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7조 [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 [학생포상]

본교 학생의 포상은 학교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①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활동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포상한다.

② 졸업생에 대한 표창은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 대외상의 포상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포상한다.

제29조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

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0조 [학생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선도처리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31조 [학생 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2조 [기타 학생 생활 지도]

학칙에 제되지 않은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세부 사항을 학생인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교직원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 [학생 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성초등학교 학생자치회를 운영한다.

② 기타 학생자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4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성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교직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협의 및 각종위원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직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회 회의에서 교직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제37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칙 개정안의 제안 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39조 [공표·시행]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9년4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2년5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3년4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04년5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05년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10년3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개정일(2012년4월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학칙 8차 개정안은 개정일(2013년11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18년4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20년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학칙 10차 개정안은 개정일(2021년12월13일)부터 시행한다.